

순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운영규정

제정 2003. 9. 9.

개정 2006. 1. 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이 영재교육원은 ‘순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’(이하 ‘교육원’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교육원은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소재 순천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정보과학 분야의 초·중학교 과학영재 발굴 및 교육
- ②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수행
- ③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④수료생의 관리 및 재교육
- ⑤각급 학교 영재교육 담당자 연수
- ⑥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

제2장 직 제

제5조(조직)①교육원에는 원장과 기획연구부, 교수부, 상담교수, 분야별 지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06. 1. 3.)

②원장은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각 부의 부장, 상담교수, 분야별 지도교수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6. 1. 3.)

④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업무)①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기획연구부는 교육원의 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교수부는 교육 교재의 연구 개발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.

④지도교수는 각 분야별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학생 관리 및 교육원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
⑥상담교수는 지도교수의 학습지도 이외의 생활지도, 교우관계, 진로상담 등의 상담을 담당한다. (신설 2006. 1. 3.)

⑦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06. 1. 3.)

⑧각 부의 부장, 상담교수 및 지도교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06. 1. 3.)

제7조(강사 등)①교육원에는 강사, 전임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,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.

③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영재교육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.

④조교는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, 각 분야별 교육의 보조 역할을 한다.

⑤원장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,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,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 근무하게 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원장, 부장 및 지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원 교육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원 기구개편 및 규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선정추천심사위원회)①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(이하 '선정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
②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부장, 지도교수,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, 영재교육전문가,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원장, 각 부의 부장 및 지도교수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(신설 2006. 1. 3.)

제10조(자문위원회)교육원의 교육내용과 활동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장 교육과정 운영

제11조(교육과정 및 학급편성)①교육원에는 초등수학, 초등과학의 초등교육과정과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정보과학의 중등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. 또한 중등교육과정에는 각각 기초반, 심화반, 사사교육반을 둔다.

②각 교육과정의 기초반과 심화반의 학급 당 학생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사사교육반은 5명 이내로 한다.

③각 과정, 각 반별 교육과정과 교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12조(학생의 선발)학생의 선발시기는 매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13조(수업 및 성적관리)①교육원의 수업은 주말교육과 집중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사사 교육반은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수업 운영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원의 영재교육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
③원장은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생의 상벌)①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②원장은 학생의 출석 미달 및 불량한 수업 태도 등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제②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.

제15조(수업료 및 장학금)①수업료의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②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16조(재정)교육원의 재정은 과학기술부 지원금, 대학 지원금, 외부협력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
제17조(운영세칙)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